

## 제10회 총회(정기회) 개최 공고

정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10회 총회(정기회) 개최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.

- 일시: 2026년 3월 29일(일) 13:00~16:00
  - 장소: 노무현시민센터 다모여강의실 (1층)
  - 안건: 1.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
2. 2026 회계연도 예산(안) 승인의 건  
3. 2026년도 사업계획(안) 승인의 건  
4. 공동대표 선출의 건  
5. 정관 개정의 건
- ※ 사전 행사: 새 회원 마중물 모임 (13:00~14:00)

2026년 2월 25일

정치하는엄마들

공동대표 김숙영, 남궁수진, 최서연

<참고> 정관

제12조(지위) 총회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4. 3. 16.>

제13조(소집과 개의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 1회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재적 권리회원 1/10 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③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일시, 장소,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전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고, 홈페이지 등에 소집을 공고한다. <전문개정 2024. 3. 16.>

## 2026년 대의원 모집 공고

정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대의원 자격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.

□ 신청 기간: 2026년 2월 25일(수)-3월 22일(일), 26일간

□ 신청 대상: 권리회원이 된 이후 1년이 지나고,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사람

□ 신청 방법: 1. 온라인 신청 <https://forms.gle/HPxK6qdrZPkQtPAM9>  
2. 사무국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신청

※ 신청 및 문의: 사무국장 010-3693-3971

2026년 2월 25일

### 정치하는엄마들

공동대표 김숙영, 남궁수진, 최서연

<참고> 정관

- 제6조(구분) ① 회원은 권리회원과 참여회원으로 구분하고,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권리회원이라 한다.  
② 권리회원이 된 이후 1년이 지나고,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대의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.  
③ 대의원 자격을 신청하고 총회에 참석한 자는 대의원이 된다. 그 대의원 자격은 다음 총회 개최 전 까지로 한다.  
④ 제2항과 별도로 운영위원은 대의원이 된다.

제7조(권리와 의무)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
1. 총회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대의원에 한해 부여한다.

## 공동대표 선거 후보자 추천 공고

정관 제21조, 제6조, 제7조에 따른 공동대표 선거 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.

- 선출 인원: 3인 (임기 2년)
- 후보 자격: 권리회원이 된 이후 1년이 지나고,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고, 2026년 대의원 자격 신청을 한 자.
- 추천 기간: 2026년 2월 25일(수)~3월 11일(수), 15일간
- 추천 방법: 홈페이지에 첨부한 양식에 따라 피추천인의 활동 이력 및 경력, 추천 사유 및 추천인 명단(권리회원 10인 이상)을 작성하여 3월 11일(수)까지 이메일로 제출

※ 신청 및 문의: [act@politicalmamas.kr](mailto:act@politicalmamas.kr) (사무국장 010-3693-3971)

2026년 2월 25일

정치하는엄마들

공동대표 김숙영, 남궁수진, 최서연

<참고> 정관

제21조(공동대표) ①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공동대표는 3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

제6조(구분) ① 회원은 권리회원과 참여회원으로 구분하고,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권리회원이라 한다.

② 권리회원이 된 이후 1년이 지나고,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대의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.

③ 대의원 자격을 신청하고 총회에 참석한 자는 대의원이 된다. 그 대의원 자격은 다음 총회 개회 전 까지로 한다.

제7조(권리와 의무)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
1. 총회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대의원에 한해 부여한다.

## 정치하는엄마들 제10회 총회(정기회) 공동대표 선거 후보자 추천서

1. 후보자 이름:

2. 후보자 활동 이력 및 경력

※ 정치하는엄마들 단체 활동 중심으로 기술 바랍니다. 단체 활동 외 이력 및 경력도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.

※ 홈페이지와 권리회원 이메일을 통해 공개됩니다.

기간	기관명	활동 내용

2. 추천 사유

※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.

3. 추천인 명단(권리회원 10인 이상)

	이름	주소	연락처
1			
2			
3			
4			
5			
6			
7			
8			
9			
10			
11			
12			
13			
14			
15			
16			
17			
18			
19			
20			

위 사람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선거 후보자로 추천합니다.

2026년    월    일

추천인 대표:

(서명)